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11. 23.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장석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08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적 시행(2023년 1월)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담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담례품(안 제2조~제5조)
- 다. 고향사랑기금(안 제6조~제17조)
- 라. 부칙(부칙안 제2조)
-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9. 28. ~ 10. 18.) 결과: 의견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수용
 - 위원회 구성 · 운영 시 성별 고려사항 반영
 - 답례품 선정 시 여성기업 생산품 선정 반영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정취지가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외 고향 혹은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 제공받는 제도임
- 우리 구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보완하고,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애향심과 답례품 혜택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고향사랑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3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2장 답례품	
제2조 (답례품의 종류)	구에서 육성하는 물품,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등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연간 기부총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예산 편성함
제4조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제5조 (고려사항)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제3장 고향사랑 기금	
제6조 (기금의 조성)	기부금,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기금 수익금 등 고향사랑 기금조성 재원에 대해 규정함
제7조 (기금의 사용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 증진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함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을 강서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거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음을 규정
제9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함
제10조 (위원회의구성)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함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함
제14조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제15조 (간사)	간사는 고향사랑 기금 업무의 담당팀장으로 함
제17조 (그 밖에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나. 세부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안 제2조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은 1. 구에서 육성하는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데 법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안 제3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안 제4조는 담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담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안 제5조는 담례품 및 담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담례품의 안정적 공급, 업무수행 능력 등 고려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의 접수 등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¹⁾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p>① 고햙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햙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햙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개인별 고햙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p>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p>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햙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햙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안 제7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으로 규정함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구 금고 예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²⁾에 예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9조는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9명 이내의 위원 구성하며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함을 규정함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및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 관리 ·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³⁾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법적 취지가 있음
-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鄉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 다만, 답례품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 기부금이 몰려 기부금의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실제 우리구의 지역특색을 잘 반영하는 물품이나 2차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지역과 답례품에 대한 홍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 고향사랑 기부제도 전국 시행에 따라 강서구에 기부하는 자를 위한 답례품 제공비,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성명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담당: 행정8급 최유진)
연락처	02.2600.6039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